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의거 공급세대수의 3% 범위 (38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강릉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강릉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공통서류 및 해당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		인감증명서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불가)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요망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 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 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 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 30 세 미만엔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직계비속	- 만 18 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23)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기간동안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확인 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별 추가 자격확인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공통서류 및 추가 해당 서류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오타자)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대표번호 : 1600-1698